

교원양성위원회 규정

제정 2020.08.1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7조의2에 따른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원 양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발전에 관한 사항
2. 교원 양성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선발 및 이수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4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실시 및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의 설정
5.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부수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, 위원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은 교무처장, 부위원장은 더:함교양대학장으로 하고 교무부처장, 교직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하고,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기초교양교육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0.08.1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